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

공동주관: 금융감독원/대한상공회의소/울산상공회의소

※ 학습목표

· '18. 11월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,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·상담

※ 학습특징

· 본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 (회계법인·감사반)을 대상으로 '18.11.1.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,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

※ 학습대상

· 기업 및 회계법인(또는 감사반)의 실무 담당자

※ 학습내용

주요 내용

1. 외감법규의 개요

- 외부감사법의 개요
-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

2.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

-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면제사유
-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, 감사계약 해지
-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유의사항
-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, 기한 등

3.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

- 감사인 지정사유 (직권지정, 주기적지정)
- 지정기간, 지정시기, 재지정 사유 등
- 주기적 지정제 면제 관련 유의사항
-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, 기한 등

4.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등

-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- 감사보고서 제출방법, 기한 등

5. 외부감사제도 등에 대한 상담